

## ■ 최신 해외정보 - 캄보디아 ■

### 캄보디아 재정관리법 개정-주식이전 등록에 대한 등록세 부과

캄보디아 정부는 2012년 12월 26일 캄보디아 정부 예산의 수입, 지출에 대한 법률인 2013년 재정관리법을 개정, 공표하였습니다. 2013년 재정관리법은 정부에 대한 등록세 규정인 재정관리법 40조를 개정하여 등록세 제도를 정비하였습니다. 특히, 회사 주식의 전부 또는 일부 양도에 대하여 등록세를 납부하여야 하는지, 그간 실무에서 혼동이 있었으며 토지소유권의 이전 등록과 달리 주식의 양도에 대하여 사실상 등록세가 부과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금번 재정관리법 제40조의 개정으로 주식 양도의 경우에도 주식가격의 0.1%에 해당하는 등록세를 납부하도록 명확히 규정하였습니다.

특히, 상무부(Ministry of Commerce)는 위 개정조항을 소급적용하여 과거 발생한 주식양도에 대하여도 등록세를 모두 납부하여야만 주식양도의 신규 등록을 해 주는 것으로 본 조를 해석운영하고 있어 많은 투자자들의 불만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새로 변경된 2013년 재정관리법(Law On Financial Management) 조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 Article 12 (Law on Financial Management for Year 2013)

Article 40 of Law on Financial Management for Year 1995 promulgated by Royal Decree No. 11.NS.94 dated December 31, 1994 shall be amended as below:

Article 40-New: Registration tax shall be determined as follow:

1. 4% of the immovable property price in respect of transferring of ownership right or possessory right on building and/or land or possession of shares in kind of immovable property in the company.
2. 4% of price of means of transportation or vehicles in respect of transferring ownership right or possessory right over the means of transportation or all kind of vehicles.
3. 0.1% of shares price in respect of transferring of any or whole part of shares of the company.
4. 0.1% of contractual price in respect of contract on providing services or supplying goods using state budget.
5. 1,000,000 (one million) Riels for legal documents, such as letter of incorporation of company, letter of merging of company and company dissolution.